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경산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12.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21	8	3	666,916	6	371,341	6	56,070
1	○○○○○○○○	◎◎ 민간위탁 및 ●○산업 보조사업 관련	1							
2	○ ○ 과	승진예정 직급 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1						
3	○ ○ 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부적정	1						1	1,781
4	○ ○ ○ ○ 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부적정		1						
5	○ ○ ○ ○ 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처분 부적정		1						
6	○ ○ ○ 동 ● ● ○ 과	공무원 겸직허가 미이행		1						
7	○ ○ 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1						1	291
8	○ ○ ○ ○ 과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1						
9	○ ○ 과	지경농민 경감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1						1	31,736
10	○ ○ ○ ○ 과 ○ ○ 과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1						1	1,362
11	○ ○ ○ ○ 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징수 소홀	1		1	640,566				
12	○ ○ ○ ○ 과	가정양육수당 급여 지급 및 환수 소홀	1		1	13,650				
13	○ ○ ○ ○ 과	아동수당 급여 지급 및 환수 소홀	1		1	12,700				
14	○ ○ 면 ● ● 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1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15	○ ○ 과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1						
16	○ ○ 과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부과	1						1	10,900
17	○ ○ ○ ○ 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처리 미흡	1							
18	○ ○ 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부적정		1						
19	○ ○ 과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1							
20	○ ○ ○ ○ 과 ● ● ● ● ● 과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1							
21	○ ○ 과	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1							
22	○ ○ ○ ○ 과	※※◇◇◇ 확장 및 고도화사업 추진 부적정	1				1	149,236		
23	○○○○○○○○	경산 ●● 조성사업 공사감독 소홀	1				1	19,356		
24	○ ○ ○ ○ 과	●●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1	73,031		
25	○ ○ ○ ○ 과	◎◎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1							
26	○ ○ ○ ○ 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업무 부적정	1						1	10,000
27	○ ○ ○ ○ 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106,928		
28	○○○○○○○○	◇◇ 도로(2단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1				1	11,146		
29	○ ○ 과	소하천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11,644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하여야 하며,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정하여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00000000에서는 0000000000000000(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 절차를 수행하며 사무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사무 및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하고자 2019. 12. 24. 경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은 후 센터 관리를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며 2018. 10. 19. ‘0000000000000000 합리적인운영방안 및 적정운영비산정 연구용역’에서 운영방식별 비교에서는 직영, 재단위탁, 민간위탁의 방법 중 민간위탁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0000000000000000의 운영체계인 것으로 용역 결과보고 하였고 위탁형태별 비교에서는 관리위탁보다 사용수익허가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경산시 00000000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규정을 따르지 않고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였다.

나.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①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¹⁾(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증금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기간·예산액·계약조건·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0000000에서는 센터를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는 ①입찰, ②지명경쟁, ③수의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했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공고결과 2회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등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 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여 평가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①입찰, ②지명경쟁, ③수익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2020. 1. 23.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상대자를 모집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며 2020. 1. 23.[1회 공고, 단독응찰(▲▲▽▽▽ ≡≡☆☆☆)에 따른 유찰] 1회 공고가 단독응찰에 따라 유찰되었고 이에 따라 2020. 2. 14.[2회 공고, 단독응찰(▲▲▽▽▽ ≡≡☆☆☆)] 2회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에 따라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익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며 2020. 2. 28. ▲▲▽▽▽ ≡≡☆☆☆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 ≡≡☆☆☆에서 설립 신고한 (사)경북○○○○○○○○이 70점 이상(85.4점) 점수를 획득하여 제안서 제출기관과 위·수탁 계약체결 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2020. 4. 10. 제안서 미제출 및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주)경북○○○○○○○○²⁾과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용·수익허가자 사용료 산정 부적정

1) 토지공시지가 적용 부적정

2) (주)경북○○○○○○○○은 2020. 4. 6. 주식회사 ▲▲▽▽▽기술주가 5,000천 원을 주식발행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2020. 4. 10.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직원이 1인도 없는 회사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 할 경우 20점 만점에 최하점 5점만 획득가능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음

도 2019. 1. 1.³⁾ 공시지가인 173,400원을 적용하여 토지재산평가액을 징수하여야 할 금액 보다 1,695,590천 원 적게 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59,344천 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3년간 178,032천 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다.

2) 사용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물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산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의 수행사업은 ①○○○○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②○○○○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③○○○○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④○○○○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⑤○○○○산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⑥그 밖에 시장이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에서는 2020. 4. 10. (주)경북○○○○○○○○○○과 센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경산시 지역특산물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만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4. 10. (주)경북○○○○○○○○○○과 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경산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 사업업무에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

3) 2019. 1. 1. 당시 형질변경하지 않아 임야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0. 1. 1. 당시는 형질변경되어 토지대장으로 관리하여 공시지가액이 m²당 222,900원의 차액이 발생함

고 전시하며 판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센터에 ○○○제조시설(2층 1,526㎡)과 ○○○ 전시시설(1층 100㎡) 있다는 이유로 전체건축시설(4,767㎡)의 재산평가액을 30퍼센트 감면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경북○○○○○○○○○○에 계약기간 3년간 매년 73,566천 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3) 사용료 미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위·수탁 계약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20. 4. 10. (주)경북○○○○○○○○○○○○○○○○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부칙에 시운전기간은 2020년 6월 말일까지로 하며, 단, 수탁기관에서 시운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상호간 협의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운전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에서는 2020. 4. 10. (주)경북○○○○○○○○○○○○○○○○과 ○○○○○○○○○○○○○○○○○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시운전기간이 종료되는 2020. 6. 30.부터 2020. 12. 31. 까지 6개월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2020. 6. 30. 이전 시운전 연장신청을 받아 계약서에 계약 후 6개월이 되는 2020. 10. 10.부터 2020. 12. 31.까지 2개월 20일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4. 10. (주)경북○○○○○○○○○○○○○○○○과 ○○○○○○○○○○○○○○○○○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2020. 6. 30. 시운전기간이 종료되는 당일 (주)경북○○○○○○○○○○○○○○○○에서 시운전 기간 연장하여 2020. 6. 30. 신청당일 연장승인하였고, 2020. 9. 29. (주)경북○○○○○○○○○○○○○○○○에서 “○○○○○○○○○○○○○○○○” 시운전 2차기간 연장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한 내부 문서에 연장사유로 ①시설보완 및 추가 공사 시행,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주 승인,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등록, 식약처 제조업 등록 등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 10. 9. 까지만 연장가능한 시운전 기간(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최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명시)을 2020. 12. 31. 까지 2개월 10일 추가연장하여 징수하여야 할 사용료 41,960천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표 2] 시운전 승인 부적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은 사용료

(단위 : 원)

연간사용료	월사용료	6월 초과기간	정상사용료	부적정사용료	미징수 사용료
188,821,000	15,735,083	2개월 20일	41,960,221	0	41,960,221

라.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0000000에서는 2020. 4. 10. 000000000000000를 (주)경북○○○○◇◇◇◇에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시설은 수탁자의 관계기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수익 허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4. 10. 000000000000000를 (주)경북○○○○◇◇◇◇◇◇에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계약서

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시설은 수탁자의 관계기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여 (주)경북○○○◇◇◇◇◇에서는 2020. 11. 27. (주)#####와 공장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월 27,600천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2021. 7. 20. (주)★★★★와 계약체결하여 매월 660천 원의 임대료를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주)경북○○○◇◇◇◇◇이 법령을 위반하여 (주)#####와 (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을 알고도 2020. 4. 10. 위탁계약서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시설은 수탁자에 관계기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수수료 부당 징수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00000000에서는 0000000000000000를 2020. 4. 10. 사용·수익을 허가하며 (주)경북○○○◇◇◇◇◇이 ○○○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조례로 해당 검사·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0000000000000000를 2020. 4. 10. 사용·수익허가하며 (주)경북○○○◇◇◇◇◇이 ○○○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로 해당 검사·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지 않

있는데도 (주)경북○○○○◇◇◇◇◇이 행정재산을 (주)#####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여 0000000000000000의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화장품의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개정을 소홀히 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자로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산업 활성화 보조사업 관련

가.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①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②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0000000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 ○○○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2020년 4억 원, 2021년 2억 원)과 ○○○산업 마케팅 지원보조사업(2020년 8억 원, 2021년 3억 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공모절차를 거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했다.

[표 3] 공개모집 절차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비고
합계			2,072,000	
2020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주)경북○○○○○○○○	400,000	
	●●●국내외마케팅 지원사업		832,000	
2021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240,000	
	●●●국내외마케팅 지원사업		600,000	

※ 미공모 사유 : 경상북도에 보조금신청 당시에 보조사업자를 선정·신청하여 경상북도에서 보조사업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모절차 미이행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경상북도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며 보조사업자로 (주)경북○○○○○○○○을 지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경북○○○○○○○○에게 ○○○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 및 ○○○산업 마케팅 지원 보조사업 등 2020년 1,232,000천 원 2021년 840,000천 원 등 총 2,072,000천 원을 절차에 맞지 않게 교부 결정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반환 지연 및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미 반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 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에서는 (주)경북○○○○○○○○에게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2건의 보조사업비를 교부결정하며 교부조건에 부가가치세 반

환에 따른 반환조건을 명시하거나 (주)경북○○○○○○○○에서 대행하여 지역화
장품기업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며 부가가치세반환에 따른 반환조건을 명시하
도록 하여 보조금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세외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주)경북○○○○○○○○에서 위 [표 3]과 같이 2020년
보조사업을 2021. 6. 25. 정산검사한 후 정산결과를 2021. 6. 29. ○○○○○○○○○
○○○○에 통보하며 2020년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1.
8월 환급 후 반납하도록 통보하였으나 2021. 8. 10.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금 반환일자가 지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아 경산시 지방▷▷주사보 ※※※
이 반환요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음에도 구두로만 지속적인 반환을 요구하
였고, 2021. 10. 11. 감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반환 조사 진행 중 2021. 10. 13. (주)경
북○○○○○○○○에서 부가가치세 반환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 받은 후 2021.
10. 15. 반환 부가가치세 46,570천 원을 반환 받았다.

또한 (주)경북○○○○○○○○에서 대행하여 (주)○○☆☆☆☆ 등 29개 기업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환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하지 않아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주)○○☆☆☆☆ 등 20개 기업
337,000천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따른
(주)○○☆☆☆☆ 등 9개 기업 48,000천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⁴⁾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산업 경쟁력강화사업 및 ○○○산업 국내외마케팅지원사업 집행액 385,000천 원의 10% 부가가치세 38,500
천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미 반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예정 직급 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2018. 12. 2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하여 승진예정 직급을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해당직렬의 승진심사를 사전의결 요청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1. 승진예정 직급 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 제30조의5,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보직관리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6급 이상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①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②자진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③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심사 ④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⑤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⑥민간 전문가 파견

근무 및 파견기간연장 승인 ⑦우대승진임용 및 근속승진임용 ⑧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2. 26.부터 2021. 7. 1.까지 승진 및 교육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31회(2018년 4회, 2019년 6회, 2020년 12회, 2021년 9회) 승진예정 직급 조정을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심의·의결 받지 않고 임용권자가 승진예정 직급을 결정하였다.

2. 승진예정 직급 조정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며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 배수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고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2018. 12. 26.부터 2021. 2. 22.까지 승진 및 교육 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승진예정 직급을 결정하며 단수정원만 있어 조정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에 대해서는 직렬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8. 25. ●●6급 AG의 승진후속 결원에 같은 직렬 하위 계급에 ●●7급 AK 외 8명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승진임용할 수 있음에도 아래 [표]와 같이 ●●6급 결원을 ◎◎6급으로 승진예정 직급을 조정하여 승진할 수 없는 ◎◎7급 BK를 승진임용하는 등 2019. 3. 1.부터 2021. 2. 22.까지 승진할 수 없는 8명이 6급으로 승진하였고 조정 전 하위직급에서 승진하여야 할 8명이 승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승진예정 직급 직렬조정 현황

승진 심사일	결원발생			승진임용 직급	승진의결자	
	사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2019.03.01.	승진후속	●●●●6급	AE	●●6급	●●7급	BU
2019.03.01.	승진후속	●●6급	AQ	●●6급	●●7급	BQ
2019.04.06.	승진후속	●●6급	AS	●●●●6급	●●●●7급	BP
2019.08.17.	승진후속	●●6급	AP	●●6급	●●7급	BA
2020.08.25.	승진후속	●●6급	AO	●●6급	●●7급	BH
2020.08.25.	승진후속	●●6급	AG	◎◎6급	◎◎7급	BK
2020.10.09.	승진후속	●●6급	AM	●●●●6급	●●●●7급	BV
2021.02.22.	교육파견	●●6급	AU	●●6급	●●7급	BY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12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징수하며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고 도시지역 외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 1.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도시지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63건, 1,781천 원을 미부과하였고, 도시지역 외 시설물에 대하여 271건, 34,091천 원을 부적정하게 부과하였다.

[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부적정 내역

연도별	구 분	도시지역 내 시설물 미부과 내역		도시지역 외 시설물 부과내역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3건	1,781,050	271건	34,091,530	
2019년	소 계	12건	387,170	88건	10,421,361	
	주 택	5건	115,970	51건	1,917,181	
	건축물	7건	271,200	37건	8,504,180	
2020년	소 계	18건	469,980	88건	11,209,726	
	주택	4건	106,550	51건	1,863,944	
	건축물	14건	363,430	37건	9,345,782	
2021년	소 계	33건	923,900	95건	12,460,443	
	주택	13건	396,160	49건	2,140,835	
	건축물	20건	527,740	46건	10,319,608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미부과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1,781천 원을 부과하고, 오부과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34,091천 원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3.-11.-다. 및 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과 같이 2020. 3. 20.에 경산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75일⁵⁾을 부적정하게 처분하였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1호 규정)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표]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부적정 내역

업 소 명 (소 재 지)	적발통보일 (적발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 (경산시 ##읍)	2020. 3. 20. (2020. 3. 4.)	청소년 출입으로 주류제공	2020. 3. 23.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75일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현 ○○○○과 소관)⁶⁾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이 신설되어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6) 2021. 3. 29. 조직개편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무 이관(○○과 → ○○○○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 5. 27. 이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 5. 27.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⁷⁾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 제9항 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등의 사무는 경상북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같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ㄱㄱ 경산지점이 2019. 10. 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를 위반하여 2019. 12. 23. 영업정지 1개월을 같음한 과징금 20백만 원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기 전(9개월)인 2020. 10. 13.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에 같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함에도, 2020. 11. 3. 영업정지 1개월에 같음하는 과징금 37백만 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를 같음한 과징금) 부적정 내역

7)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719, 회신일자 2021. 2. 24.)

업체명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일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주)##### 경산지점 (경산시 ##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 상태 그대로 재위탁)	2019. 10. 23.	과징금 20백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같음)	2019. 12. 23.	정상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	2020. 10. 13.	과징금 37백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같음)	2020. 11. 3.	과징금 처분 부적정

이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에
같은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겸직허가 미이행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 @동, ●●●●과
내 용

경산시 @ @동 지방▷▷주사 SQ과 ●●●●과 지방●●주사보 SW은 경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021. 9. 30.)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를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 소속 공무원은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경산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 지방▷▷주사 SQ은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2021. 10. 18.)까지 경산시▲▲◁◁협회 임원(전무이사)을 겸직하면서 협회 운영비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경산시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으며,

위 사람 지방●●주사보 SW은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2021. 10. 18.)까지 경산시▲▲◁◁협회 임원(이사)을 겸직하면서도 경산시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표] 겸직허가 미이행 현황

부서명	성명	직급	단체명	직위	활동기간	겸직허가 여부
@@동	SQ	지방▷▷주사	경산시▲▲◁◁협회	전무이사 (사무장)	2017. 1. ~ 현재까지	부
●●●●과	SW	지방●●주사보		이사		부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제3호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28호는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1호는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제2호는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제3호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제4호는 공유재산의 지분, 제5호는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제6호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분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이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제23호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같은 조례 제40조의 각 호와 같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분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에 부쳐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산시 ○○과에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일반(도유)재산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분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것에 대한 법적 근거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1항 제28호에 따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2호 및 제 10호의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일반(도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현황

지목	면적 (㎡)	재산가격 (천 원)	대부신청서 접수일	계약체결 및 통보일	대부기간	대부자	계약방법
대지	82	159,408	2020. 3. 2.	2020. 3. 4.	2020. 1. 1. ~ 2024. 12. 31. (5년간)	JA	수익계약

※ 경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일반재산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8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각 호의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조항을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준용하여 위 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렇듯 경산시 ○○과에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일반재산이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위 재산의 대부계약 신청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부기간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산시 ○○과에서는 2015. 10월부터 2019. 12. 31.까지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일반재산의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왔으며, 2020. 3. 2.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신청서를 접수⁸⁾하였고, 2020. 3. 4. 대부기간이 2020. 1. 1.부터 2024. 12. 31.까지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통보 공문⁹⁾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전인 2020. 1. 1.부터 2020. 3. 3.까지의 기간은 대부계약 기간이 아닌, 무단 점·사용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했고, 계약체결일인 2020. 3. 4. 이후부터를 대부기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전인 2020. 1. 1.부터 2020. 3. 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재산의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소급적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변상금 1,746,66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그보다 291,110원 적은 1,455,55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다.

[표 2] 대부 소급적용 기간에 대한 대부료 부과 및 변상금 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8) 민원접수번호-***** (접수일자 2020. 3. 2.),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9) 경산시 ○○과-*****(2020. 3. 4.), “공유(도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통보 및 대부계약서 송부”

대상기간	대부료 부과 내역(A)	변상금 산정 내역(B)	차액(C=B-A)	비고
2020. 1. 1. ~ 2020. 3. 3.	1,455,550	1,746,660	291,110	

※ 경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소 부과된 변상금 291천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 확장 및 고도화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

경산시 ●●●●과에서는 “※※◇◇◇ 확장 및 고도화사업 관급자재 구입(콘크리트 말뚝)”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입찰공고 및 재공고입찰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확장 및 고도화 사업 관급자재 구입(콘크리트 말뚝) 입찰공고 현황

구분	공고일자	개찰일자	개찰결과	기초금액(천 원)	구입수량(m)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초입찰	2021. 3. 22.	2021. 3. 29.	유찰(무응찰)	171,616	3,942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경상북도 소재 업체
재공고입찰	2021. 3. 30.	2021. 4. 6.	유찰(단독응찰)			

※ 경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재공고입찰 유찰 후인 2021. 5. 3. 설계변경에 따라 아래 [표 2]과 같이 콘크리트 말뚝의 구입수량과 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입찰에 부치지 아니한 채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부당한 계약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2] ※※◇◇◇ 확장 및 고도화사업 관급자재 구입(콘크리트 말뚝) 변경 내역

구분	변경내역		변경일자	변경사유
	구입수량(m)	기초금액(천 원)		
변경 전(입찰공고)	3,942	171,616	2021. 5. 3.	현장지반 조건 상이 (설계변경)
변경 후	2,285	102,930		

※ 경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 확장 및 고도화 사업 관급자재 구입(콘크리트 말뚝)” 계약 체결 현황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천 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상호	소재지	비고	
2021. 5. 31.	102,930	주식회사 ♣♣♣♣건설	대구광역시 @@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미소지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경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경농민 경감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자경농민이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타 용도 등으로 사용시 경감받은 취득세에 대해 추징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22건(31,736,950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자경농민 감면 추징대상 명세

연번	납세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과세표준(원)	추징세액(원)
계	22건					31,736,950
1	AB	-	○○면 ○○번지 764.0000㎡	2018-08-30	87,650,000	1,577,700
2	AC	-	○○면 ○○번지외 3필지 3178.0000㎡	2018-10-18	317,300,000	5,711,400
3	AD	-	○○면 ○○번지 992.0000㎡	2018-12-24	360,000,000	6,480,000
4	AE	-	○○면 ○○번지 869.0000㎡	2019-02-15	78,600,000	1,414,800
5	AF	-	○○면 ○○번지 78.0000㎡	2019-03-18	1,840,000	33,120
6	AG	-	○○면 ○○번지 1664.0000㎡	2019-05-09	77,343,700	1,392,180
7	AH	-	○○면 ○○번지 89.0000㎡	2019-05-20	4,050,000	72,900
8	AI	-	○○면 ○○번지 575.0000㎡	2019-06-10	3,200,000	57,600
9	AJ	-	○○면 ○○번지 66.0000㎡	2019-06-13	18,000,000	324,000
10	AK	-	○○동 ○○번지 479.0000㎡	2019-10-25	170,000,000	3,060,000
11	AL	-	○○읍 ○○번지 331.0000㎡	2019-12-17	42,000,000	756,000
12	AM	-	○○면 ○○번지 436.0000㎡	2019-12-23	101,640,000	1,829,520
13	AN	-	○○읍 ○○번지외 4필지 8734.0000㎡	2020-02-14	26,235,000	550,930
14	AO	-	○○읍 ○○번지 2124.0000㎡	2020-04-14	185,240,110	3,334,320
15	AP	-	○○면 ○○번지 16.5300㎡	2020-04-16	2,500,000	45,000
16	AQ	-	○○면 ○○번지외 3필지 1524.0000㎡	2020-07-07	1,350,000	24,300
17	AR	-	○○동 ○○번지 31.0000㎡	2021-01-11	5,837,300	105,070
18	AS	-	○○면 ○○번지 17758.0000㎡	2021-03-11	9,156,000	164,810
19	AT	-	○○면 ○○번지외 2필지 474.0000㎡	2021-03-18	4,000,000	72,000
20	AU	-	○○면 ○○번지외 1필지 515.5000㎡	2021-06-24	850,000	15,300
21	AV	-	○○면 ○○번지외 2필지 1054.0000㎡	2019-08-30	64,000,000	1,152,000
22	AW	-	○○면 ○○번지 2063.0000㎡	2020-12-22	198,000,000	3,564,00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취득세 경감분 31,736,95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에 따른 면허 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에서는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등록면허세 납부전 면허증서 교부

「지방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 납부금액, 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에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골프장업 체육시설업 등 18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변경)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교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가 누락되었다.

[표 1] 등록면허세 납부 전 면허증 발급

연번	년도	업종	상호명	납세자	등록면허세	비고
계				18건	300,000	
1	2019	체육도장업	**	AB	15,000	대표자변경
2	2019	체육도장업	**	AC	15,000	대표자변경
3	2019	체력단련장업	**	AD	22,500	대표자변경
4	2020	골프연습장업	**	AE	45,000	신규신고
5	2020	체력단련장업	**	AF	12,000	신규신고
6	2020	체육도장업	**	AG	15,000	신규신고
7	2020	체육도장업	**	AH	15,000	신규신고
8	2020	무도학원업	**	AI	15,000	신규신고
9	2020	체육도장업	**	AJ	15,000	신규신고
10	2020	체육도장업	**	AK	12,000	신규신고
11	2020	체육도장업	**	AL	15,000	신규신고
12	2020	골프연습장업	**	AM	18,000	신규신고
13	2020	당구장업	**	AN	9,000	대표자변경
14	2020	체육도장업	**	AO	15,000	대표자변경
15	2020	체육도장업	**	AP	9,000	대표자변경
16	2020	체육도장업	**	AQ	15,000	대표자변경
17	2020	가상체험체육시설업	**	AR	22,500	대표자변경
18	2020	당구장업	**	AS	15,000	대표자변경

2.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에서는 체육시설업 면허를 취득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부과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58건(1,062,50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체육시설업 등록면허세 미부과

연번	업종	납세자	상호명	등록면허세(원)			비 고	
				계(58건)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62,500	289,500	286,500	486,500	
1	골프연습장업	AB	**	102,000	34,000	34,000	34,000	
2	골프연습장업	AC	**	9,000	9,000			
3	골프연습장업	AD	**	102,000	34,000	34,000	34,000	2017, 2018 미부과
4	당구장업	AE	**	67,500	22,500	22,500	22,500	2018 미부과
5	당구장업	AF	**	27,000	9,000	9,000	9,000	2018 미부과
6	당구장업	AG	**	27,000	9,000			
7	당구장업	AH	**	45,000	15,000	15,000	15,000	2017, 2018 미부과
8	무도학원업	AI	**	45,000	15,000	15,000	15,000	2018 미부과
9	무도학원업	AJ	**	45,000	15,000	15,000	15,000	2018 미부과
10	체력단련장업	AK	**	45,000	15,000	15,000	15,000	2018 미부과
11	체력단련장업	AL	**	102,000	34,000	34,000	34,000	2018 미부과
12	체육도장업	AM	**	45,000	15,000	15,000	15,000	
13	체육도장업	AN	**	45,000	15,000	15,000	15,000	2018 미부과
14	체육도장업	AO	**	45,000	15,000	15,000	15,000	
15	체육도장업	AP	**	27,000	9,000	9,000	9,000	2018 미부과
16	체육도장업	AQ	**	45,000	15,000	15,000	15,000	2018 미부과
17	체육도장업	AR	**	27,000	9,000	9,000	9,000	

연번	업종	납세자	상호명	등록면허세(원)			비 고	
				계(58건)	2019년	2020년		2021년
18	체육도장업	AS	**	30,000		15,000	15,000	2018 미부과
19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T	**	22,500			22,500	
20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U	**	34,000			34,000	
21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V	**	34,000			34,000	
22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W	**	22,500			22,500	
23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X	**	22,500			22,500	
24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Y	**	12,000			12,000	
25	가상체험체육시설업	AZ	**	18,000			18,000	
26	가상체험체육시설업	BA	**	22,500			22,500	
27	가상체험체육시설업	BB	**	12,000			12,00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76건, 1,362,5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2017~2018년 미부과 건에 대하여도 조사한 후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징수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융자금을 지원하고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은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융자 받은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전에는 융자금 상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금 상환 독촉 및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했으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감면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체납자 66명 총 640,566,824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고지가 확인된 건은 3건에 불과하고, 2019년 10월 이후에는 용자금 상환 독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13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용자금 상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환능력을 상실한 8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감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금 체납 현황

(단위 : 원)

구분	체납자	납부고지	독촉장 발부	체납액	비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용자금	66명 (관할구역 외 13명 포함)	3명	2019. 10. 22.	640,566,824	

한편 감사기간 동안 용자금 체납자 66명에 대한 재산조회(2021. 10. 18.) 결과 총 28명이 차량, 토지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체납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금 640,566,824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정양육수당 급여 지급 및 환수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¹⁰⁾에서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 지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할 양육수당과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 9. 19. 시행)”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10)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과 → ○○○○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영유아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사회복지전산관리망을 통해 변동알림이 제공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했고, 지급이 정지되어야 할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상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영유아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15명에 대한 아동수당 13,650,000원을 과오지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가정양육수당(90일 이상 국외 체류자) 급여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구분	과오지급 지속 아동	과오지급			비고
		기 간	개월 수	금 액	
가정양육수당	15명	2018. 7. ~ 2019. 11.	1~11개월 (총 124개월)	13,650,00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미환수된 가정양육수당 13,650,000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조치
하시기를 바라며, 2018년 7월 이전에 과오지급한 가정양육수당에 대하여도 조사 후
환수 등 적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아동수당 급여 지급 및 환수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할 아동수당과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후 아동수당액을 환수 결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했고, 지급이 정지되어야 할 기간에 아동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상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3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3,600,000원을 과오지급하였고, 이 중 900,000원에 대하여만 환수 하였으며, 12,700,000원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아동수당(90일 이상 국외 체류자) 급여 과오지급 및 환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과오지급 아동	과오지급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기 간	개월 수	금 액		
아동수당	37명	2018. 9. ~ 2021. 9.	1~15개월 (총 136개월)	13,600,000	900,000	12,700,00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환수된 아동수당 12,700,000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면, ◎◎면
내 용	

경산시 ○○면과 ◎◎면에서는 「농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접수하고 취득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이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면 및 ◎◎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전용목적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상의 농지 취득자(신청자)가 농지전용 협의명세서의 대상자와 상이함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와 농지전용자가 다른 내역

연번	발급 기관	접수일자 (발급일자)	신청인		발급내역			농지전용자 (협의일)	비고
			성명 (법인명)	주소	읍면	지번	면적(㎡)		
합계			2개 법인			7필지	2,922		
1	○○면	2018.11.6. (2018.11.6.)	주@@@@	대구 %%구	○○면 **리	**	316	(주\$\$\$\$ (2018. 5. 17.)	
						**	599	"	
						**	29	"	
						**	468	"	
						**	51	"	
2	○○면	2021.6.23. (2021.6.23.)	주####	경산시 **면	○○면 **리	**	1,454	AS, DC (2021. 5. 26.)	
						**	5	"	

그 결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2개 법인이 농지 7필지 2,922㎡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단독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여부를 협의하며, 2019. 4. 17. BN이 신청한 경산시 ○○면 @@리 **번지에 단독주택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와 2020. 3. 5. BP가 신청한 경산시 @@읍 ##리 **번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에 대하여 전용허가(협의)하였다.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4호 하)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또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 제6장 제1절11)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

11) 「2017년 농지업무편람」 P.260 <참고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및 P.439 <참고자료> “4.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 시달”

(1필지)를 같은 종류의 시설¹²⁾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동일 필지에서 같은 종류시설 건축을 위해 한 사람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동일 필지에 여러 사람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할 경우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0㎡를 초과하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지 않아야 했다.

[표]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허가자	협의 신청일	협의 결과 통보일	전용면적	소재지	허가목적	토지소유주	토지사용승락자
SA	2019. 4. 16.	2019. 5. 10.	554㎡	○○면 @@리	단독주택	SA	소유주 본인
BN	2019. 4. 17.	2019. 5. 10.	524㎡	(농림지역, ●●보호구역)			SA
SB	2020. 2. 24.	2020. 2. 26.	430㎡ (부지 290, 도로 140)	@@읍 ☆☆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SC	SC
BP	2020. 3. 5.	2020. 3. 10.	725㎡	(농림지역, ●●보호구역)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표]와 같이 농지전용 제한면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19. 4. 17. BN이 경산시 ○○면 @@리 **번지에 단독주택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 524㎡를 신청했을 때에는 2019. 4. 16. SA이 동일 필지에서 신청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 554㎡와 합산한 1,078㎡를 적용하고, 2020. 3. 5. BP가 경산시 ##읍 \$\$리 **번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 725㎡를 신청했을 때에는 2020. 2. 24. SB가 동일 필지에서 신청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 290㎡(도로 제외)와 합산한 1,015㎡를 적용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한데도 전용허가(협의)하였다.

그 결과 BN, BP에게 전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12) 같은 종류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분류에 의한 시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부과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변경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장부지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90만 원 (1회 위반 시), 공장부지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만 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변경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변경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1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회 사 명	변경사항	신 청 일	변 경 일	법적 신청기한	지연기간	과태료 미부과
합 계	12건					10,900
(주)@@@	회사명	2019.05.07.	2018.08.10.	2018.10.09.	7개월	900
####(주)	대표자	2019.05.23.	2019.02.27.	2019.04.26.	1개월	900
(주)\$\$\$\$	회사명	2019.05.24.	2016.04.11.	2016.06.10.	35개월	900
**●●	회사명	2019.07.08.	2017.03.06.	2017.05.05.	26개월	900
☆☆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2019.08.20.	2018.12.31.	2019.02.28.	8개월	900
(주)●●	회사명	2019.10.10.	2019.08.08.	2019.10.07.	3일	900
◆◆	회사명	2019.11.08.	2013.11.26.	2014.01.25.	70개월	900

회 사 명	변경사항	신 청 일	변 경 일	법적 신청기한	지연기간	과태료 미부과
♣♣	회사명	2020.07.22.	2019.11.15.	2020.01.14.	6개월	900
♠♠♠♠	회사명, 대표자	2020.08.04.	2018.01.05.	2018.03.04.	29개월	900
◆◆◆◆	대표자	2020.10.20.	2020.02.25.	2020.04.24.	6개월	900
●●●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2021.04.29.	2021.01.13.	2021.03.12.	1개월	900
▣▣▣▣	회사명	2021.06.08.	2021.03.29.	2021.05.28.	11일	1,00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부과된 과태료 10,900,00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처리 미흡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12호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 제3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물차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9. 7. 4.부터 2021. 8. 20.까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283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미처리 내역

(단위 : 천 원)

유 형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건수	보조금액	건수	보조금액	건수	보조금액	건수	보조금액
합 계	14	4,400	35	8,158	234	17,942	283	30,500
1일1회이상 주유	5	1,330	12	2,417	13	2,499	30	6,246
거리대비 주유시간 이상	2	544	4	708	4	1,112	10	2,364
단시간 반복주유	7	2,526	19	5,033	10	2,771	36	10,330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	0	0	0	0	207	11,560	207	11,560

한편 감사기간 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부 유형(유효하지 않은 사업자¹³⁾)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207건(보조금액 11,560천 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확인내역

(단위 : 천 원)

유 형	건 수	보조금액	비 고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	207건	11,56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3) 사업자등록증을 비교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뜨는 유형으로 타 유형에 비해 부정수급 여부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2021. 2. 15. 건축주 PS으로부터 경산시 @@면 ##리 **번지 상의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아래 [표 1]과 같이 신청받아 2021. 2. 26. 수리하였다.

[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

신고번호	대지위치	용도	구조	면적	지상층수	건축주	신고 신청일	비고
2021-◎◎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93	@@면 ##리 **번지	가설건축물 (농막)	경량철골구조	19.32㎡	1층	PS	2021. 2. 15.	신고수리 2021. 2. 26.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축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건축주 PS이 경산시 @@면 ##리 **번지번지에 신청한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은 경량철골구조로 컨테이너와 형태 및 구조가 상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¹⁴⁾를 위한 현장 확인 시 면적, 층수 및 용도가 축조신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21. 2. 26.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이행강제금 4,161,000원(건축신고 미이행, 주택 48㎡)보다 3,950,400원 적은 210,600원(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임시창고 18㎡)을 부적정하게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4)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해당 건축물의 무단 축조에 대한 “위반건축물 자인서”를 제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산시 ●●과에서는 2018. 8. 22. 경산소방서로부터 경산시 @@동 **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중 건축법 위반 의심대상으로 통보¹⁵⁾받아 2018. 8. 31. 건축법 위반 의심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위반사

15) 경산소방서 ○○○과-10341(2018. 8. 22.), “건축법 위반 의심대상 통보”

항을 확인하고 2018. 9. 10. 건축주에게 원상복구(자진철거 등) 하라는 시정 통보¹⁶⁾와 2018. 12. 14.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시정 촉구¹⁷⁾를 하였으며, 2019. 1. 22.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9. 3. 15.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반건축물 건축주 KC은 해당 건축물을 2019. 6. 30.까지 철거하겠다는 의견서를 2019. 3. 7. 제출하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2019. 12. 30.까지 철거하겠다는 의견서를 2019. 6. 27. 다시 제출하였다.

이후 위 건축주는 2019. 10. 14. 해당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경산시 ●●과에 통보하였고, 경산시 ●●과에서는 철거 당일 현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한 위반건축물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시정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산시 @@동 **번지 상의 6층 단독 주택 무단증축 건에 대하여 2019. 10. 14. 철거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며,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으나¹⁸⁾ 시정한 것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표] 위반건축물 현황

16) 경산시 ●●과-34036(2018. 9. 10.), “위반건축물 시정통보(@@동 **, 김**)”

17) 경산시 ●●과-46040(2018. 12. 14.),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동 **, 김**)”

18) 2019. 10. 15.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지붕 및 일부 벽체 철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해당 건축물이 감사일 현재도 존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철거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면적(㎡)	위반내용	적발일	비고
경산시 @@동 **	김**	조립식패널조	주택	50.76	무단증축	2018.8.22.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산□□□□ 관람석 증축공사’를 (주)@@###과 계약(2018. 7. 25.) 및 준공(2019. 3. 5.)하였고,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를 &&###(주)와 계약(2018. 7. 11.) 및 준공(2020. 12. 21.)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에서는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사업비(백만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경산□□□□ 관람석 증축공사	관리동 932.13㎡	2018. 7. 25. ~ 2019. 3. 5.	2,816	1,969	847	(주)@@###	
경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6개 지구 13,175㎡	2018. 7. 11. ~ 2020. 12. 21.	17,082	6,805	10,277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2019. 3. 5. 준공된 ‘경산■■□□□ 관람석’을 관리하면서 2020. 8. 14. 202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시행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장 방문 결과 벽체 누수, 관람석 바닥 물고임 및 보도블럭이 침하 등의 하자가 확인되었다.

또한 경산시 ●●○○○○과에서는 2020. 12. 21. 준공된 ‘경산▣▣▣▣ C지구 주차건물’을 관리하면서 ‘경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장 방문 결과 주차건물 3층 천정 누수로 인하여 철골 부재 부식 등의 하자가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검사 등 하자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업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건설업 실태조사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청문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영업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9호, 제82조 제5호 및 제83조 제8의2호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6장 2.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관청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¹⁹⁾(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통보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와 청문을 실시한 경우 청문일자 및 청문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기준일은 기술능력의 경우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로 하고, 자본금은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나.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 명령 미이행시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업체에서 제출된 증빙자료에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었는데도 추가 증빙자료 요청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관련

2018. 10. 1.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

19)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 정보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

(국토교통부 ○○○○○-6304호)을 통보받고, 2018. 11. 5.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게 2018. 11. 23.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경산시 ◇◇과-12221호)으로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설(주)(대표자 JW)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5. 30.까지는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하고, 2018. 5. 3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기술인력 2명이 부족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정보시스템에 2019. 6. 25.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 위 업체는 정당한 행정처분 없이 2019. 1. 1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산시와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12건의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주)##건설(대표자 SD)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중복 특례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통보일인 2017. 9. 29.부터 2017. 12. 12.까지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중복 특례를 인정하여 정보시스템에 2020. 1. 9.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 위 업체는 정당한 행정처분 없이 2020. 12. 4. 경산시와 경산□□□□공원 화단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주)\$\$건설(대표자 KA)에 대하여 기술인의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나 누락된 증빙자료 요청 등 보완요청 없이 정보시스템에 2021. 6. 14.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다.

나.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관련

2019.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

(국토교통부 ○○○○○-6607호)을 통보받고, 2019. 10. 24.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게 2019. 11. 29.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경산시 ◇◇과-13078호)으로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표자 PJ)에 대하여 기술자의 고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도 누락된 증빙자료 요청 등 보완통보 없이 정보시스템에 2021. 6. 14.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다.

다.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관련

2020. 10. 21.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7971호)을 통보받고, 2020. 11. 4.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게 2020. 12. 11.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경산시 ◇◇과-14768호)으로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대표이사 LA)에 대하여 전년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통보일인 2019. 9. 30.부터 2020. 5. 31.까지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일러취급기능사(현 에너지관리기능사)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여 정보시스템에 2021. 6. 14.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다.

그리고 (주)◎◎##(대표이사 SC)에 대하여 전년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통보일인 2019. 9. 30.부터 2019. 12. 1.까지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하고, 2020. 2. 1.부터 2020. 3. 31.까지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정보시스템에 2021. 6. 14.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 위 업체는 정당한 행정처분 없이 2021. 3.

31. 경산시와 경산◆◆◆◆◆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주)\$\$\$건설(대표이사 JP)에 대하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일인 2020. 12. 11.까지 아무런 보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 보고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7개월 정도 지연된 2021. 7월 경 위 업체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받아 2021. 7. 21. 등록기준 충족확인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종결처리 하였다.

그 결과 기술인력 부족으로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건설업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게 되는 등 건설업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 처리 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사.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가.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부터 실태조사 보고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0. 1.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6304호)을 통보 받고, 총 조사건수 122건 중 1건에 대하여 실태조사 심사업무를 처리 하지 않았고,

2019.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6607호)을 통보받고, 2019. 10. 24.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게 2019. 11. 29.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경산시 ◇◇과-13078호)으로 통보하여, 등록기준 의심업체로부터 46건의 실태조사 보고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지체 없이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건수 46건 중 23건만 이행하고 나머지 23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사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20. 11. 16.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8년 실태조사에 대하여 조사건수 총 122건 중 미이행 1건,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조사건수 총 46건 중 미이행 23건으로 조사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행하고, 조사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요청 등 감사 조치할 수 있으니 실태조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국토교통부 ○○○○○-8900호)을 접수 받고도 심사업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1. 6. 14. 실태조사 미실시 업체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기준 충족확인 사유로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입력한 후 2018년 및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를 종결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 10. 1. 통보된 2018년 실태조사가 2021. 6. 14. 완료되고, 2019. 9. 30. 통보된 2019년 실태조사가 2021. 6. 14. 완료되는 등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따르면 법 제34조,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법 제34조,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및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각각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한편 경산시 ◇◇과에서는 2021. 1. 5.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광양 ○○○○ 진입도로 개설공사중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대표이사 MG)에서 ☆ ☆ 외 2개사에게 건설기계임대료 31,820천 원을 미지급하였고,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대한건설기계협회 ○○○○○-08호)을 접수받고, 2021. 1. 7. ☺☺건설(주)에게 위반혐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공문(경산시 ◇◇과-262호)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주)에서는 “3건 중 1건은 원청사인 ☆☆기업에 직불요청하였고, 나머지 2건은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2021. 1. 21. 경산시 ◇◇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업체에서 제출한 ‘직불 동의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직불 합의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원도급사에게 직불을 요청하는 서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직불 합의서로 볼 수 없고,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사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주)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추가적인 공사대금 지급은 힘들다”는 답변을 들어, 건설기계임대료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경산시 ◇◇과에서는 2021. 1. 14.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해당 업체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사실을 통보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건설기계임대료 미지급 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2021. 3. 2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건에 대한 영업정지 및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신고@@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담당자 NB)로 대금 변제 여부를 조회한 결과 ☺☺건설(주)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도급사인 ☆☆기업에서 전체 금액의 60%만 ○○건기 외 2개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건설(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적정한 행정처분 없이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하여 ☆☆건기 외 2개 사가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건설업 폐업 신고 수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는 같은 호 가목 ~ 라목에 따라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1년 6개월에서 10년의 범위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폐업신고로 등록말소 하는 경우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5장 3. 가. ~ 다.의 규정에 따르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 후 처리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말소의 원인이 폐업신고인 경우 건설업 재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말소의 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별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제재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주)&&건설(대표자 KS)에 대하여 2018. 11. 8.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사실을 통보받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임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처분 조치 없이 2019. 1. 14. (주)&&건설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결과 위 “1”부터 “4”와 같이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설업 관리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업 실태조사 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주), (주)##건설, \$\$\$\$(주), (주)%%%%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확장 및 고도화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 확장 및 고도화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건설(주 대표자 MR 외 2개사와 2020. 12. 23. 공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확장 및 고도화사업	정수장 증설 1식	28,444	13,465	14,979	2021. 1. 8. ~ 2022. 12. 28.	@@건설 (주) 외 2 (MR)	(주)## (PL)	16%

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준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 경우를 말한다)는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굴착 깊이가 감소하는 경우, 지하안전시설을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그 밖에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굴착 깊이가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굴착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흠막이·차수 공법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0. 6. 8.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 시설확장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 회신’ 공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과-2160호)에 따르면 단계별 세부시공계획 수립, 지하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

이행, 평가서에 제시된 계측계획 반드시 준수, 기존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 안전성 검토 재수행 등 적절할 조치 이행, 협의내용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를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협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 경우)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지하안전확보방안 마련 대상 여부 및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측계획 준수 등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확장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자가 감사일 현재 단계별 굴착계획, 시공순서 등을 포함한 세부시공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협의내용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평가서에 제시된 계측계획(지중경사계 2개소, 지하수위계 2개소, 건물경사계 2개소)에 따라 계측기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지 않아 지하수위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계획 수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경산시 감사담당관실 직원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평가서에 반영된 비탈면 계획도에는 지하 10m 이상 굴착부분에 대하여 open cut 공법으로 적용되어 있고, A-A단면의 경우 1:1.0 ~ 1:1.2의 기울기로 2단으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부 비탈면에 대하여 1:0.5의 기울기로 굴착 후 마대 쌓기로 변경하였고, B-B단면의 경우 1:1.0 ~ 1:1.2의 기울기로 3단으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부 비탈면을 제외하고 1:0.3 ~ 1:0.5의 기울기로 굴착하여,

지하안전확보 마련 대상 및 재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반영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경산시 ●●●●과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건설현장에서는 10미터 이상 굴착구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고, 평가서에 반영된 계측을 실시하지 않아 이상 변위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집중호우 시 비탈면 유실 및 지반 침하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등 안전관리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각의 계획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 계측 시공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 받은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10미터 이상 굴착부분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계측계획 (지중경사계 2개소, 지하수위계 2개소, 건물경사계 2개소)을 준수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고도 시공자가 감사일 현재까지 계측기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토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굴착작업 시 배수처리를 위하여 비탈면 및 가시설 상부에 우수, 지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굴착면 내부의 우수 및 지하수 유도배수를 위해

가설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시공자가 비탈면 상하부에 가설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시스템비계 조립 기준 미준수 등 안전관리 소홀

「산업안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시스템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시스템비계 시공 시 비계 기둥 침하방지 조치를 위한 밑받침 철물 및 벽 연결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시공자가 시스템비계를 조립하면서 벽이음재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기둥의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공 중인 구조물 기초에 수직재를 설치하면서 비계기둥의 밑둥이 2분의 1정도만 겹치도록 시공되어 비계 구조물이 전도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가”, “나”, “다”와 같이 계측 시공 미이행 등 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다.

3. 안전보건조정자 미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확장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2021. 1. 8. 착공되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있다.

4.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 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확장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 부지 내 시 소유의 기존 ‘※※◇◇◇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현장 사무실과 부지 활용이 가능하여 현장사무실 설치비와 부지임대료가 불필요함에도 현장사무실 350㎡에 대한 설치비 47,993천 원 및 현장사무실 부지 4,290㎡에 대한 부지임대료 31,272천 원, 강관틀 비계 적산 근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도면과 수량산출서 불일치로 1,526㎡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사업비 22,790천 원, ※※◇◇◇ 시설 내 시행되는 공사로 별도의 웬스 설치, 부지 임대료, CCTV 설치 등이 필요 없음에도 관급자재관리비 11,393천 원, 조립식 간이흙막이 운반거리 과다 1,842천 원, 암절취부 쇄석포설 구간 면고르기 품 2,058㎡ 계상 부적정으로 사업비 33,946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강관틀 비계 수량산출 오류 등으로 공사비 149,236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굴착 구매 변경, 계측기 미설치 등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준수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③ 가설배수로 미설치, 시스템비계조립 기준 미준수, 안전보건조정자 미지정 등 안전관리 미이행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또한 강관틀 비계 과다 적용 등 과다 계상된 사업비 149,236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경산 ○○○○○ 조성사업 공사감독 소홀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소
내 용

경산시 ○○○○○○소에서는 ‘경산 ○○○○○ 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주)@@ 대표자 KJ과 2019. 9. 18. 공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경산 ○○○○○ 조성사업	생태공원 조성 1식	5,821	4,704	1,117	2019. 10. 7. ~ 2022. 1. 12.	(주)@@ (KJ)	67%

1. 품질시험기구 검교정 미 실시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에 따르면 품질시험기구에 대해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소에서는 ‘경산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에도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기구에 대한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독자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품질시험기구 검교정 미실시로 품질시험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재해·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미통보 및 협의내용 이행 부적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소에서는 ‘경산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예방조치 및 환경보전조치를 포함한 공사 중지 통보서 및 재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공사 현장에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재해예방조치 및 환경보전조치를 포함한 공사 중지 통보서 및 재개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현장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구조물 시공 부적정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산시 ○○○○○○소에서는 ‘경산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도서에 반영된 암거 날개벽을 식생옹벽블록으로 2020. 8. 19. 설계변경하였고, 변경된 설계도서에 1:0.3의 구배로 식생옹벽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1:0.2에서 수직의 구배로 연장 44m 구간이 시공되어 감사기간 중 시공사에서 제출한 구조검토 결과 전도 및 활동에 대하여 안전율이 부족하여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리드를 보강²⁰⁾하여 식생옹벽블록을 재시공 할 경우 사업비 28,200천 원, 설계도서에 반영된 식생옹벽블록 뒷채움 잡석 $V=36\text{m}^3$ 물량을 시공하지 않아 사업비 3,800천 원 등 총 32,0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재시공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설계서에 반영된 RC암거 기초 잡석 $L=179\text{m}(V=202\text{m}^3)$ 미시공 사업비 5,700천 원, 경계석 기초 거푸집 $L=569\text{m}$ 미시공 사업비 5,456천 원, 가도 PP마대

20) 당초 설계에 반영된 날개벽이 아닌 2020. 8. 19. 설계변경하여 반영된 식생옹벽블록으로 재시공할 경우 현장여건상 그리드를 보강하여야 안전율이 충족되는 것으로 시공사에서 구조검토결과 및 의견 제출

A=47m² 미시공 사업비 4,700천 원, 상수도 관로 되메움 물량 V=702m³의 다짐장비가 램머로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콤팩터로 다짐하여 사업비 3,000천 원, 설계도서에 식생옹벽블럭 후면 부직포 A=810m²가 350g 규격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250g 규격을 시공하여 사업비 500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압거 기초 잡석 미시공 등으로 공사비 19,356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시험기구 교정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공사중지 및 재개 통보서 미제출 및 협의내용 이행상황 미기록 등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 소홀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적합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또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안전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식생옹벽 블럭은 설계도서, 지방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재시공하시기 바라며,(시정)
- ④ 과다 계상된 사업비 19,356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동 ○○교~㉠㉠교간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동 ○○교~㉠㉠교간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 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동 ○○교~㉠㉠교간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6	46		2018. 3. 5	2018. 3. 9. ~ 2020. 10. 2	주식회사 ##	완료
@@동 ○○교~㉠㉠교간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L=1.3Km,B=12.0m ※ 흙막이 지보공 L=1.2Km,H=3~5m	3,203	1,526	1,677	2021. 1. 27	2021. 3. 26. ~ 2021. 10. 24.	@@(주)	공정률 0% (중지중)

1. 경상북도 공사계약 원가심사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는 시·도 계약 심사 의무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1항에 따르면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등은 원가심사 대상사업이며,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산시 ○○○○과에서는 도비(400백만 원)가 포함된 공사비 3,203백만 원의 ‘@@동 ○○교~㉠㉠교간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경상북도에 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의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축점 0+580~0+760 구간에 대해 오픈컷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조립식간이 흙막이벽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49,753천 원, 공사비가 저렴한 톤마대로 쌓기가 가능함에도 PP마대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5,181천 원, 데크공사 경량형강철골조 설치시 비내력식으로 적용 가능함에도 내력식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1,127천 원,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스콘을 적용하여 공사비 6,970천 원 등 총 73,031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동 ○○교~㉠㉠교간 도시계획도로(중3-24)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구간은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완료(2020.10.2.)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착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73,031천 원(제경비포함)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 ㉠㉠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 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0	20		2019. 1. 18	2019. 1. 22. ~ 2020. 6. 18	@@	
㉠㉠ ㉠㉠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	교량개체 L=18m, B=8.0m	382	226	156	2020. 7. 6	2020. 7. 13. ~ 2022. 2. 24.	##	

1. 교량 거더 분리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²¹⁾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감사관은 2019. 11. 11.(경상북도 감사관-15882, “교량공사 분할 발주 관련 감사원 감사사례 알림”) 교량 설계 시 거더 부분을 물품(관급자재) 제작·설치로 분할 설계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사례를 시군에 전파하였다.

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한편 교량공사는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구조별·공정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이고 부분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거더를 교량공사에 포함시켜 통합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1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교량 거더(GC라멘 공법)를 관급자재 제작·설치로 분할 설계하고 발주하여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없이 공사 시행

「하천법」 제3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1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 하천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 신청(2021. 9. 27.)에 따른 보완 통보²²⁾(2021. 9. 28.) 공문을 받는 등 감사일(2021. 10. 8.) 현재까지 하천점용 허가 통보를 받지 않고 가설도로 및 가시설 흙막이벽 등을 시공하였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22) 1. 교량 개체에 따른 하천원상복구 계획
2. 가설도로 계획에 따른 수리계산서 첨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될 가설공사는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 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굴착공사는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1리 마을진입교량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²³⁾에 가설 및 굴착공사 세부 안전관리계획이 누락 되었는데도 아무런 검토·확인이 없었으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도 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3)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항타기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급자재 제작·설치로 분리 발주한 교량거더(GC라멘공법)는 설계변경하여 도급공사에 통합하여 설치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경상북도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지방하천 내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또한 누락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 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토지·건물의 소유주 변경,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발생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0건에 대하여 과태료 10,000천 원을 미부과하는 등 도로점용 권리·승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지연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 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20	9	9	2
미부과액	10,000	4,500	4,500	1,000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도로법」 제106조 및 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도로 점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건설사업 관리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⓪⓪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관로 L=45.7km	24,840	18,499	6,341	2019. 11. 15. ~ 2023. 11. 6.	@@	%%%	30%
■■지구 및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관로 L=47.3km	30,835	23,493	7,342	2020. 4. 27. ~ 2024. 6. 22.	##	***	17%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 지연 등 협의내용 이행 부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19. 5. 10.과 2019. 5. 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 공문(대구지방환경청 ○○○○과-3180호 및 3419호)에 따르면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7.3.1. ‘수질’에 따르면 공사 중 하천 구간에 대한 수질 저감방안으로 총 18개 구간에 대해 가물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9. 11. 15. 착공하였고, ‘■□지구 및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20. 4. 27. 착공하였음에도 2020. 10. 6.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 통보서를 각각 307일, 157일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공사현장에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않는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저감대책으로 제시된 가물막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8,744㎡에 사용되는 노면 표지용 페인트 1,982포를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에 반영하여 사업비 47,493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추진가시설의 버팀보 연결 423본의 볼트접합 단가를 중복으로 계상하여 사업비 3,313천 원 등 총 50,806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지구 및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7,828㎡에 사용되는 노면 표지용 페인트 1,773포를 관급자재로 구입 하지 않고 사급자재에 반영하여 사업비 53,463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현장 내 소운반 단가산출 시 상차 단가 4,427㎡를 중복으로 계상하여 사업비 2,659천 원 등 총 56,122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그 결과 차선도색 자재 관급 변경 등으로 공사비 106,928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6,928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 도로(2단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소
내 용

경산시 ○○○○○○소에서는 ‘○○~□□간 도로(2단계) 확포장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건설(주) LD와 공사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간 도로(2단계) 확포장공사	##	○○	도로확포장 L=810m, B=8m	1,416	2021. 6. 24.	2021. 6. 25. ~ 2022. 11. 24.	(주)■■건설 LD	5%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소에서는 ‘○○~□□간 도로(2단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반영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착공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소에서는 법령 및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하천공사의 현장에서 오탉수 유출확산으로 인해 주변수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연환경의 보존 및 수역자원을 보호 하기 위한 오탉방지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영구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설계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 및 영구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 주변 환경의 보존 및 수역자원 보호,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재해영향평가 협의의견 미반영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비치해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소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지 않았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사업지구 하류에 토사유출발생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저감대책시설로 임시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4. 공사비 과다 계상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산시 ○○○○○○소에서는 ‘○○○~□□간 도로(2단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사무실 부지가 경산시 소유의 부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및 설계내역에 반영된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와 관련하여 임대료 6,461천 원(제경비포함)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설계내역의 토공 흙쌓기 건설기계 그레이더 장비효율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이 넓고 토질의 상태, 지형 등이 양호하여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여건이 고르지 않은 보통 상태의 효율로 계상하여 4,685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1,146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산시 ◇◇과에서는 ◁◁, ●●● 소하천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소하천 정비공사	@@ ##	**	소하천정비 L=1.7km	997	2019. 12. 4	2019. 12. 18. ~ 2021. 9. 20.	(주)▣▣ SO	98%
●●● 소하천 정비공사	##	&& %%	소하천정비 L=4.0km	3,198	2020. 4. 29	2020. 5. 13. ~ 2024. 2. 8.	(주)▣▣▣▣ WK	30%

1.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소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해당 공사에 계상된 품질시험 항목(노상·노체 다짐시험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비 4,698천 원(제경비 포함)을 현재까지 감액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에 소홀하였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미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착공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9조의2에 따르면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공사 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산시 ◇◇과에서는 ●●● 소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감사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식생옹벽블럭 설치 뒤채움 부직포 사용에 있어 공사시방서 (200g/m²), 설계내역서(400g/m²), 도면(350g/m²)에 기재된 부직포 규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확정하지 않고 200g/m²으로 시공하였으며 사업비 4,581천 원(제경비 포함)을 현재까지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 소하천정비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민원인의 요구로 626m³ 흙이 계획된 운반거리(L=5km)보다 짧게 운반(L=0.3km)하여 사업비 2,365천 원(제경비 포함)을 현재까지 감액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1,644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